

2016년도 하남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6. 6. 20.~ 6. 24.(5일간)
- 감사분야 : 2013년 6월 이후 소방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 감사결과

감사결과			처분계획						
			행정상(건)		신분상(명)			재정상(천원)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천원)	시정	주의	징계	경고	주의	회수	과태료
11건	11건(28명)	300	4	7	-	4	24	-	300

II 주요 지적사항

○ (인사·행정) 자격증가점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 부적정

- **(자격가점)**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가점은 소방장 이하에 한하여 부여토록 되어 있는데도, 2014년 하반기 및 2015년 상반기 근평 시 소방위 이★★이 2014.04.03. 취득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에 대해 자격증 가점 0.2점을 부여.
- **(체력검정)** 2015년 체력검정성적 평정 시 육아휴직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방장 윤○○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전년도에 실시한 체력검정 점수 5.00점에 3.5점을 더하여 2로 나눈 점수 4.25점으로 평정하여야 함에도 0.00점으로 평정.

❖【관련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점평정)
소방공무원 가점 평정규정 제4조(자격증 가점평정)

○ (예산·회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예산집행 부적정

-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 물품 구입비 및 의용소방대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격려·위문·간담회·보고회 등은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간담회 소요비용을 집행함.

❖【관련규정】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 제3장(비목별 세부집행지침)

○ (재난대응·안전) 소방용수시설 고장발생 보고 및 수리 지연

- 00119안전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상식소화전 12호, 41호, 42호의 제수변퇴수불량 사항을 2014.11.08.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통해 인지하여 즉시 고장발생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18일이 경과한 2014.11.26.에 지연 보고하였고, 00119안전센터에서 관리하는 지상식소화전 127호, 지하식소화전 2호, 비상소화장치함 1호와 00119안전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상식소화전 97호 등 총 4개 소방용수시설 등은 고장이 발생하여 현장대응단에서 소방행정과(장비팀)로 수리의뢰를 하였는데 소방행정과(장비팀)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짧게는 92일에서 길게는 222일까지 고장이 발생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지연 수리하는 등 소방용수시설 관리 소홀

❖【관련규정】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예방·민원)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부적정

- 다중이용업소의 주된 출입구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일 경우 자동문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도, 비상벨과 연동하여 개방되는 자동문이 설치된 대상에 대하여 완비증명서 발급함.

❖【관련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시설등)

수범사례 1 고층건축물 내 비상콘센트 추가 설치 유도

□ 추진개요

-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다수의 고층건축물이 건설되고 있음
- 고층건축물 화재발생 시 장시간의 소화활동으로 인한 휴대용 조명등 방전 등 위험요인이 다수 존재

□ 현황 법령 및 실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

5. 소화활동설비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 현행 법령에서는 11층 이상 고층 부분에만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저층에서 비상전원을 공급할 방법이 없음

□ 추진실적

- 위례, 미사지구 내 공동주택 등 비상콘센트 설치 의무대상에 대해, 각 출입구 1층에 비상콘센트 설비 추가 설치토록 적극 유도함
- 위례·미사지구 내 공동주택 16단지 설치함

□ 기대효과

- 소방장비 활용빈도가 많은 1층에서 비상콘센트 설치로 현장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
- 공사·감리업체의 적극적 호응으로 소방안전 문화 확산 기여

수범사례 2 CCTV 활용한 신속한 현장대응 및 안전관리

□ 추진개요

-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 체계 필요
- 신속정확한 현장 정보 획득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및 안전사고 방지

□ 세부 추진계획

- 하남시(안전총괄과)에서 운용중인 통합관제 CCTV영상 소방활동에 연계
- 선제적 재난 대응태세 확립 및 현장 통제단장 지휘역량 강화
 - ※ CCTV 현황 : 330개소 847대(재난, 산불,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신도시 공사현장 등)

□ 시스템 구성



□ 기대효과

- 화재·재난 등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부가효과 발생(범죄 예방 등)
- 유관기관·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입체적 감시활동 가능
- 신속한 정보로 각종 재난의 골든타임 확보 및 현장 안전사고 방지